#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67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최수진・김예지・서지영

구자근 · 성일종 · 김미애

최형두 · 김선교 · 김소희

이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 건물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이전에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었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건축물이 더 이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타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시행 이전처럼 세제해택을 주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21조의26).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중 "가목"을 "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제121조의26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2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	
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	
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공제대상 자산
   가. (생 략)
   <u><신</u> 설>
  - <u>나. 가목</u>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2.·3. (생략)
- ② ~ ⑤ (생략)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양도차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1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
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u>다.</u> <u>가목 또는 나목</u>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
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1. (생략)
-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 자한다는 내용
- ② ~ ⑤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u>다목까지</u>
② ~ ⑤ (현행과 같음)